

2017년 개정세법 – 개인과세 관련 주요내용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법인전환의 필요성 증대), 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2016. 12. 20. 공포된 세법의 개정내용 중 개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 법인전환의 필요성 증대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38%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을 개정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4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였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도 위와 마찬가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5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총 44%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법인의 경우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법인소득에 대해서 최고 22%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만 부과되어 법인소득을 배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형태의 기업운영이 개인 사업보다 유리하므로,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수요가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인전환과 관련한 뉴스레터 추가 발송 예정).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6.6%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	79.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5%)
4천600원초과 8천800만원이하	640.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6.4%)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1천74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5%)

1억5천만원초과 5억원이하	4천13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1.8%)
5억원 초과	1억8천76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4%)

위 개정규정은 201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2.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축소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인해 공제 제도의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합니다) 제69조를 개정하여 신고세액공제율을 7%로 축소하였으며, 세제당국은 앞으로도 신고세액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왕에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 공제율 인하 • (좌동) - 10% → 7%

위 개정규정은 2017.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유기간 기산일이 2016. 1. 1. 로 되어 있어 2018. 12. 31. 양도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제도 도입 취지인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제95조를 개정하여 기산일을 취득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제도 • 일정기간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시 양도세 추가과세 ※ 기본세율(6~38%) + 10% • 2016. 1. 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보유기간 기산일 : 2016. 1. 1.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기산일 조정 • (좌동) ※ 기본세율(6~40%) + 10% • (좌동) - 보유기간 기산일 : 취득일

위 개정규정은 201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현행 소득세법은 배우자·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고 합니다)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 97조의2를 개정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적용배제) - 수용 등으로 양도시 -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시 -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 이월과세 비교과세 도입 • 적용배제 사유 추가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

위 개정규정은 2017.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도 보완

납세자의 신고부담 완화와 납세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제105조를 개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조정하였으며 예정신고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정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 횟수 조정 - 분기별로 예정신고 → 반기별로 예정신고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시행시기 : 2018. 1. 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105조)	• 예정신고기한 연장 - 원칙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예정신고 - 예외 :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시행시기 : 2017. 1. 1. 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지원하고 소형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소득자의 세부담 전가를 방지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정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 2016. 12. 31. → 2018. 12. 31.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 -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전용면적 60㎡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 제외 - 적용기한 : 2016. 12. 31. → 2018. 12. 31.

7. 공익법인 제도 개선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익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공익법인 과세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정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상증세법 제50조의6조) 신설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 - 적용대상 :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	• 주식보유한도계산방법 보완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주식보유한도 계산 * 2017. 1. 1.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축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5% * 2017. 7. 1. 이후 출연·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공익법인 사후관리 (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	•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시행령으로 비율 위임) •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내용 공시 * 2018. 1. 1.부터 시행
----------------------------------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46 | E-Mail. hjikim@shinkim.com |
| ● 노형철 세무사 | TEL. 02 316 4483 | E-Mail. hcrho@shinkim.com |
|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 TEL. 02 316 4219 | E-Mail. ihchung@shinkim.com |
| ● 이정진 전문위원 | TEL. 02 316 4417 | E-Mail. jjlee@shinkim.com |